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
----------	----

제출년월일 : 1992년 4월 9일

발의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자치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법 규정에 맞도록 자치구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목적 및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기금출납공무원 명칭 변경
- ㉡ 진료내역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카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 통보 규정 삽입
- ㉢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횟수 조정 및 의료보호 정지 완화
- ㉣ 대불금 상환기간내 미상환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간 조정
- ㉤ 대불금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조정
- ㉥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 반납규정 삽입

3. 관계법규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 의료보호법 제18조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 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제11조”를 “제21조”로 하고 “복지계장”을 “보험연금계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제8조 제2항중 “1월내에”를 삭제하고 “납입기간을 정하여” 다음에 “지체없이”를 추가하고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제2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2 (보고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 (보고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의료보호법 제9조의</u> 규정에 의한 <u>의료보호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u> (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의료보호법시행 규칙 제28조 제1항</u>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u>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u>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u>복지계장</u> 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u>제21조</u> <u>보험연금계장</u> ② <u>현행과 같음.</u>
제7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후 <u>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u>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한다. ② 생 략	제7조(지출) <u>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상환</u> ② <u>현행과 같음</u>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u>10만원 미만은 4회</u> 2. <u>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u> 3. <u>20만원 이상은 12회</u>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u>정지한다</u>. ③ 생 략		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2. <u>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한 때</u> 3. <u>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에 한한다.)</u> ② <u>삭 제</u>
(신 설)	제9조의 2(보고등) <u>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험연금계장으로 한다.

②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성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원인 행위 관제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황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의2 (보고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